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6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용혜인·김남근·김남희

박홍배 · 송재봉 · 염태영

윤종오 • 이수진 • 전종덕

정춘생・정혜경・조 국

한창민 · 황명선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은 시행령을 통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노동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노동하는 경우에만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도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관련하여,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에서는 배제되어 있으나 사업장의 규 모·소득액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 수만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3개월 이상 계속 노동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하지만, 애초 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고용 기간 3개월이 넘는 경우에 도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삭제).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	제10조(적용 제외)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	<u><</u> 삭 제>		
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